

우수수산물등인증기관 지정서

- 지정번호: 제 - 호
- 기관(업체)명:
- 대표자:
- 주소:
- 인증업무 분야:
- 유효기간:

위 기관을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물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